



2004. 2

1.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개요

1.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 종래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여 대학생에게 기업 장기근무 (6개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현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대학과 기업에게는 산업계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 육성 및 발굴 기회를 제공합니다.
- 산학협력을 교수와 기업의 개인적 협력 중심에서 대학과 기업의 기관간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학생중심의 인재양성 분야로 확대합니다.

2.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 기업과 대학간 협약체결의 연계 및 조정
 - 대학이 각자 참여신청을 하면 협의기구가 조정자 역할을 하여 기업과 대학의 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합니다.
 - 따라서 개별 기업과 대학 입장에서는 동시에 매우 많은 상대방과 협약체결시도를 하는 효과를 가져와 협약체결 확률이 높아지며 사업의 시행 빈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협의기구에서 서로간의 입장 및 현실을 고려한 조정을 실시하므로 상호간 요구조건이 충족되어 기업과 대학이 협약내용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 사전직무교육의 의무화
 - 사전직무교육을 의무화하여 참여 학생에게는 현장 적응력 및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기업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사전직무교육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교육이 어려운 기업은 협의기구가 지정한 기업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학점부여 및 장기연수 의무화

- 기업은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 반면 학생은 학교 수업 때문에 방학을 이용한 단기연수만이 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학점부여 및 장기연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이러한 장기연수(6개월) 실시에 따라 기업은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학교수업 참여시 이수할 수 있는 학점(8~15학점)을 부여받게 되어 휴학을 하지 않고서도 기업현장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은

- ① 현장연수, ② 사전직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현장연수

- 기업과 대학간 협약체결을 통해 대학생을 현장연수생으로 채용하여 산업현장의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또한 연수생은 1인당 월 30만원 이상씩의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을 지급 받게 됩니다.

② 사전직무교육

- 현장연수 실시가 확정된 연수생을 대상으로 현장연수 실시 전, 적응력을 키우고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개월 미만으로 40~160시간동안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 기업-대학간 협의에 따라 기업이나 민관협의기구 지정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실시절차



5. 각 시행단계별 세부내용 및 제출서류

1단계 : 사업 공고

- ▶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에서는 사업 실시 전 많은 기업과 대학,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On/Off-Line을 통하여 사업시행 공고를 실시하며, 각 기업 및 대학, 학생은 사업공고를 확인합니다.

2단계 : 참가 신청

- ▶ 사업 공고 후 기업 및 대학은 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역할과 의무를 확인한 후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각각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로 프로그램 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 참가신청서류
 - 기업 :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서(기업용)」 (서식 1)
 :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서식 2)
 - 대학 :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서(대학용)」 (서식 3)
 :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지원계획서」 (서식 4)

3단계 : 기업·대학간 연계 작업

- ▶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는 각 기업과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많은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업과 대학간 연계를 지원합니다.

4단계 : 기업·대학간 협약 체결

- ▶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의 조정 등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각 기업과 대학은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협약서(서식6)」를 표준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복수의 상대방과 협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 ▶ 협약이 체결되면 대학은 협약서 사본을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로 송부하고,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는 협약서 사본 수령 후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참가확인서**」를 발행합니다.

5단계 : 참가희망 대학생 참여 신청

- ▶ 협약이 체결되면 대학은 협약이 체결된 기업의 명단과 내용 등을 소속 학생에게 공고한 후 학생의 참가신청을 접수합니다.
- ▶ 학생은 학교에서 공고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에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서(학생용)**」(서식 5)를 제출합니다.

6단계 : 연수대상자 선발 및 계약 체결

- ▶ 대학이 참가희망자의 자료를 기업에 제공하면, 기업은 면접 등을 통하여 연수대상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연수대상자들은 기업과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계약서**」(서식 7)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단계 : 프로그램 실시계획서 제출

- ▶ 연수생대상자 선발이 확정되면 대학은 프로그램 실시 3일전까지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실시계획서**」(서식 8)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① 대학-기업간 프로그램 협약서 사본
- ② 연수생 신청서 사본 및 연수생 명단(서식9)
- ③ 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 참가 확인서(협의기구 발행본)
- ④ 협약기업의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사본

- ※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실시계획서」에는 현장연수 및 사전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을 협의기구 및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8단계 : 사전직무교육 실시

- ▶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연수생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 연수생에 대한 사전직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 사전직무교육은 기업과 대학간 협약내용에 따라 대학이 해당 기업 또는 협의 기구에서 사전직무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며,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학은 7단계의 「프로그램 실시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① 사전직무교육 계획신고서(서식 13)
- ② 사전직무교육 계획서(서식 14)

9단계 : 현장연수 실시

- ▶ 사전직무교육이 끝나면 기업과 대학은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수생에게 현장연수를 실시합니다.
- ▶ 기업은 연수생에게 정규적인 사내업무를 부여하고 직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다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 현장연수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 연수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약정해지를 할 경우 연수생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은 「현장연수참가 증명서」(서식 12)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10단계 : 프로그램 종료 및 보고서 제출

- ▶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연수생은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은 학교 자체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연수생 개인별 보고서와 함께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 및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 ▶ 프로그램을 이수한 연수생은 협약서의 내용에 따른 소정의 산학협동교육 학점을 부여받게 되고, 원하는 경우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에서 발급하는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수료증」도 받게 됩니다.

※ 연수수당 지급

- ▶ 참여기업은 참여대학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 금액 최소 월 30만원이상)을 연수생에게 연수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 대학은 프로그램 실시후 매월 출석부(서식 11)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0)를 지방노동관서에 유선(FAX) 등으로 제출하여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며, 지방노동관서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II. 2004년 1학기 시범사업 관련 공지사항

1. 시범사업 추진경과 예상되는 어려움

□ 1차 수요조사 실시

- 2003년 12월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기관과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협 등 경제단체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대학 및 기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희망대학과 기업간의 매칭작업을 시행공고와 관계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사업의 난제 : 시간축박 등

- 올해 1학기에 대학생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서는 한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 시범사업의 경우 대학측 수요가 있더라도 기업과 매칭이 되기 위해서는 학점 인정(8~15학점 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대학측에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 기업과 대학간 매칭후 학생모집 선발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어진 시간이 짧고 방학기간중이라는 특수성을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은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향후 일정과 추진방안

□ 향후 일정

- 이번 시범사업은 대학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3월 15일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생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실시 일전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실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모든 준비작업은 3월 10일까지 최종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시간상 제약을 고려한다면 현재 가장 바람직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시 기	추진 내용
2.10(화)	- 사업 공고
2.10(화)~2.13(금)	- 신규 기업 및 대학 신청 접수
2.10(화)~2.21(토)	- 기업-대학간 협약 체결 - 대학측의 연수대상자 모집
2.23(월)~2.28(토)	- 기업측의 연수대상자 인터뷰 - 기업측의 연수생 선발
3. 2(화)~3. 6(토)	- 학생의 수강신청 변경 등 준비 완료 - 대학-사전직무위탁교육기관간 협의 및 계약 완료
3. 8(월)~3.10(수)	- 사전직무교육 커리큘럼 등 준비 마무리
3.11(목)	- 대학측,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실시계획서 접수완료
3.15(월)~8.31(화)	- 대학생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시행

□ 추진방안

- 각 단계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 작년말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의 수요조사에 따른 기존 기업, 대학측 신청은 바로 협약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월 10일 화)부터 기업-대학간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동시에 기업-대학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라면 대학은 연수대상자 모집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새로 신청된 기업 및 대학의 경우 신속하게 매칭과 협약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민관협의기구는 최대한 신속하게 가능한 대학으로 매칭을 진행하며, 동시에 기업-대학간 협약을 유도하겠습니다.
- 각 추진단계를 종료한 대학 및 기업은 일정과 상관없이 다음 단계로 곧바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학 기업측 협조요청사항

□ 사업당사자인 기업, 대학은 월 15일 사업시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의 홈페이지(www.sinsanhak.net)가 2월 11일 오픈 예정이오니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대학측

- 대학측은 협약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대학단체 및 각 대학은 학점부여, 학칙개정 등 사업시행을 위한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수강신청 등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동시에 학생들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각 대학은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우편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에게 최대한 이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및 경제단체 측

- 가능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극대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업체의 참여를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단체는 기업의 협약 및 프로그램 시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참가기업 지원업무를 강화해 주십시오.

4. 기타 유의 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2003년 12월 수요조사결과에 응한 대학과 기업의 경우 이번 「시행지침」에 수록된 서식 1(기업측)과 서식 3(대학측)은 기존 수요조사표로 같음
기업, 대학은 서식 2(기업측), 서식 4(대학측)를 작성해주십시오.
- 신규 신청하는 대학, 기업의 경우 「시행지침」에 수록된 서식 1, 2(기업측), 서식 3, 4(대학측)를 필히 작성하여 제출해주십시오.

□ 협약 관련 유의사항

- 수요신청을 한 기업이나 대학이라 하더라도 조건 등의 불일치로 인해 기업-대학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민관협약기구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기업과 대학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